
**망 무임승차 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나라의 모든 이용자들은 유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 인터넷 망은 통신사가 구축한 사적 재산으로
인터넷이 80~90년대 상업화 되면서부터 유상이었음

√ 개인 · 가계 · 기업 · 공공기관 · 심지어 사회적 약자들도
망 이용대가(요금)를 지불하고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음.

√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나,

√ 글로벌 빅테크만 인터넷망을
무상으로 쓸 수 있다는 법률 규정이나 권한은 없음.

질문1: 아무도 인터넷망을 무상으로 쓰겠다고 한 적 없음. 모두가 인터넷접속료를 이미 내고 있음. 그것 외에 별도의 통행세 즉 데이터전송료를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임.

“해외CP들이 국내에 직접접속하면서 무임승차”? 국내에서 유튜브/넷플릭스보려면 *해외망과 국내망*을 모두 거쳐야 함. 해외망 즉 우리나라까지 데이터를 실어날라주는 CDN과 해저케이블 건설비용에 대해 “무임승차”론이 타당한가? 도리어 덕분에 국내망사업자들이 상위망사업자들에게 내야 하는 인터넷접속료를 엄청나게 절약해주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국내망사업자들의 ‘무임승차’ 아닌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요금의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망 이용대가(망 사용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전용회선서비스 등의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이용하고 그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지불하는 이용요금이다.

■ <한미 FTA 협정 제 14장 통신> 제 14.24조 정의

최종이용자라 함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 이외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 공중 통신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 또는 가입자를 말한다.

■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란 콘텐츠 제공사업자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에게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 등 전송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콘텐츠제공사업자(CP: Content Provider)”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고시>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제2조제11호 단서에서 말하는 부가통신역무란, 법 제2조제11호 본문의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한다.

■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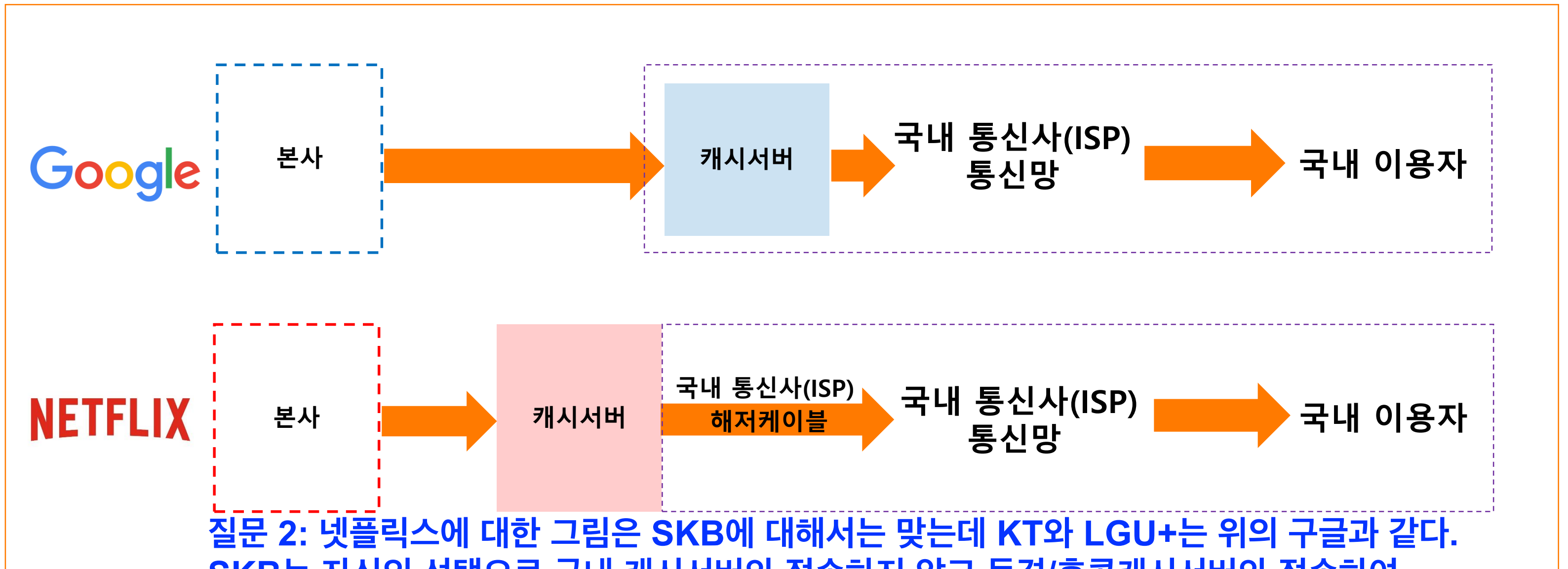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아.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디지털가입자회선(DSL), CATV망 또는 중계유선망, BWLL 및 Dial-up 등을 이용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 자.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법안에 대한 찬반 논쟁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 구글과 넷플릭스가 처음으로 만난 통신사는 한국의 통신사(ISP)다.



질문 2: 넷플릭스에 대한 그림은 SKB에 대해서는 맞는데 KT와 LGU+는 위의 구글과 같다. SKB는 자신의 선택으로 국내 캐시서버와 접속하지 않고 동경/홍콩캐시서버와 접속하여 해저케이블로 데이터를 국내까지 끌어오면서 안 써도 될 돈을 매년 수십억 내지 1백억 넘게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망 이용대가(망 사용료)에 대한 거짓 정보와 팩트체크

14개월 ('20년4월~'21년6월) 동안 양사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법원은 넷플릭스 주장을 모두 기각함.

√ 법원은 1심 소송 동안 3차례의 양사 변론, 수천 페이지의 서면 자료 검토, 여러 명의 증인 심문과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긴 과정을 거친 끝에, 이와 같이 판결했다.


주장

NETFLIX

- ✓ 망 중립성 = 무상
- ✓ 이중요금 부과
- ✓ 접속 유상/전송 무상
- ✓ 넷플릭스는 접속하지 않고, SKB가 전송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

VS

항변



전부 인용

- ✓ 망 중립성과 무관
- ✓ 양면시장 특성상 각자 요금을 지불
- ✓ 접속/전송 구분은 현행법상 無근거
- ✓ 넷플릭스는 SKB 망에 접속, 유상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상



“넷플릭스는 SKB로부터 연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형평에 부합한다” (인터넷의 유상성, 법원 결정문, 21.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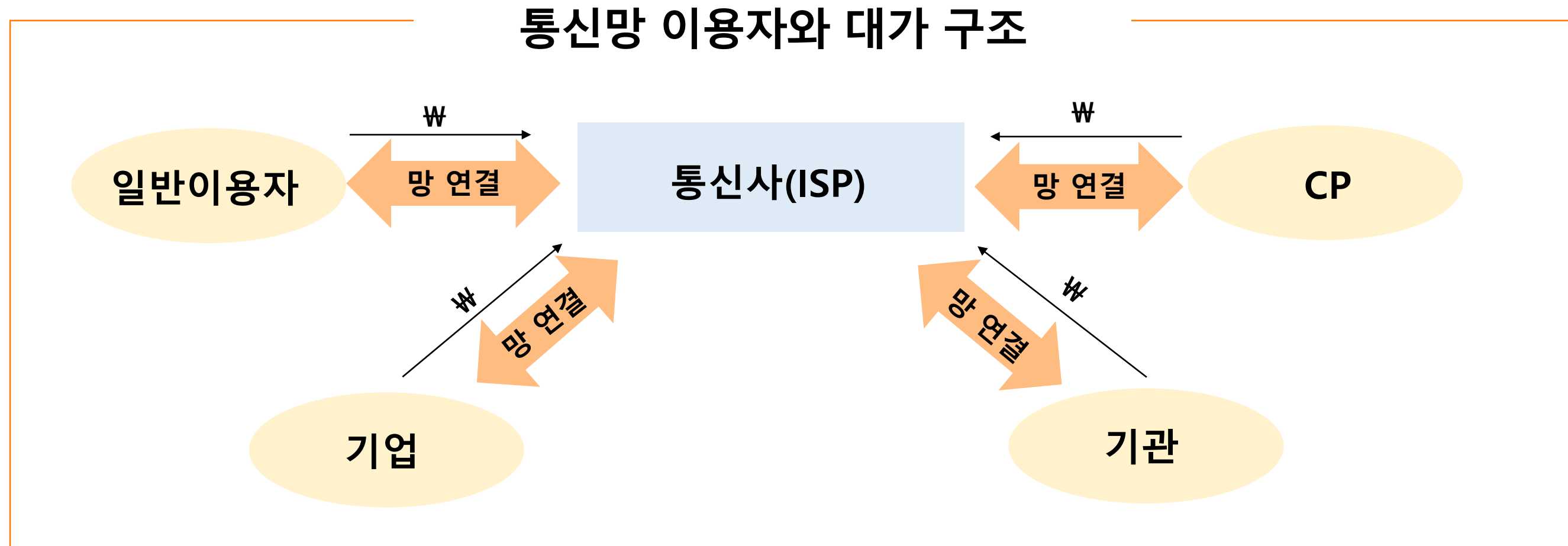
[팩트체크 1]

“**접속**은 유료, **전송**은 무료이다.”

팩트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접속'과 '전송'은 구분되지 않는다.

모든 이용자는 '인터넷 망 연결(※)'에 대한 '대가'를 통신사에 지불하는 것이다.



√ 일반 이용자 · CP · 기업 · 기관 등 통신사 인터넷 망에 연결된 **'모든 이용자'** 들은 **망 연결에 대한 대가인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함.

※ 연결 · Access · 접속 모두 동일한 의미임

질문 3: 연결, Access, 접속에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있는데 “전송”에 대해서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문에 없음. 아래 14쪽의 Tim Wu의 인용문도 번역해보면 “접속료만 있지 전송료는 없어야 한다”는 망중립성 옹호논문의 일부임. 또 판결문에 보면 ‘연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현금일 필요 없고 OCA(넷플릭스캐시서버)제공일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자료의 “지불”이라는 표현이 적당한가? 그래서 수많은 네트워크들이 무정산상호접속(피어링)중 아닌가?

법원에서도 '접속'은 유료, '전송'은 무료라는 넷플릭스의 주장을 부정했다.

넷플릭스 주장

가) 인터넷을 구성하는 수많은 종단(終端, endpoint)에 연결되도록 인터넷에 접속(access)하게 하는 것과 피고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이 요청한 콘텐츠를 전송(delivery)하는 것은 구별된다.

법원 판결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넷플릭스는 피고를 통하여 인터넷 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소송 1심 판결문 14p 中

√ '접속'과 '전송'의 구분은 **법원에서 이미 판결한 사항**으로, 2심에서 넷플릭스도 더 이상 해당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일부 글로벌CP는 **이를 사실인 것처럼 여론에 호도하고 있음**

[팩트체크 2]

“망 사용료는 인터넷 종량제이다”

팩트가 아닙니다

일반 이용자와 CP는 데이터 사용량이 아닌, 인터넷 속도에 따라 계약한다

√ 일반 이용자는 1기가(1Gbps), 500메가(500Mbps) 등 인터넷 속도만 계약할 뿐 데이터를 얼마나 쓰던지 상관없음

√ CP도 100메가, 100기가 동시에 보낼 수 있는 인터넷 속도를 계약하는 것은 일반이용자와 동일함

√ 법안이 통과되어도 이러한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질문 4: 2016년 발신자총량제 시행 이후로 이미 국내망사업자들은 상호간의 총량제정산 부담 때문에 CP들과 CDN들에게 부가하는 인터넷접속료(트랜짓피)와 직접접속료(피어링피)를 전부 또는 일부 총량제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확인 바란다.

또 그런 상황이라면 법안에 나온 ‘정당한 망이용대가’도 총량제로 산정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해외CP들로부터 새롭게 받는 “망이용료”든 국내CP들로부터 계속 받는 “망이용료”든 말이다.

마지막으로 “망이용료”라는 국제적으로는 없고 “인터넷접속료”, “페이드피어링” 이라는 말만 있다. 둘다 접속용량에 비례하는데 전자는 ‘이용한 만큼 써야 한다’는 어감이 있어서 총량제를 떠올리는데 굳이 “망이용료”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팩트체크 3]

“망 사용료는 망 중립성 위반이다”

팩트가 아닙니다

국내 법원에서는 망 중립성과 망 사용료는 무관하다고 판결함.

법원 판결

넷플릭스는 피고를 통하여 인터넷 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통신사가 자사망에 흐르는 합법적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인 망 중립성에 관한 논의나 '전송의 유상성'에 관한 논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⁸⁾은 피고에게 적어도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터넷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소송 1심 판결문 14p 中

질문 5: 오픈넷 자료에 보면 FCC2010년 망중립성 명령(문서번호 FCC10-201, 24-29문단, 67문단)과 2018년 캘리포니아 망중립성법에는 통신사들이 자기 고객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댓가를 데이터발신자로부터 받는 것은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12년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가 유럽망사업자연합의 발신자종량제 제안을 거부한 적이 있는데 이 역시 전송에 대한 댓가를 수령하겠다는 계획을 막은 것 아닌가? 1심판결은 위 자료를 검토하였는가?

바로 아래 14쪽의 Tim Wu의 인용문도 번역해보면 “접속료만 있지 별도의 과금은 없다”는 의미로 읽히고 이 상황을 Zero Price Rule(즉 전송료는 무료라는 규칙)이라고 명명하고 있지 않나? 전체 논문도 바로 ZPR규칙을 옹호하는 내용이다. 접속료 외의 별도 과금 즉 전송료를 받겠다는 망사업자들의 주장에 반대하기 위해 쓴 논문 아닌가?

과기정통부(정부)와 'Tim Wu' 교수(학계)도 '망 중립성'과 '망 사용료'는 무관하다고 명시했다.

√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해설서

한편, 원칙적으로 현행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차단 및 불합리한 차별 등을 금지하는 ISP의 인터넷 트래픽 관리 행위에 대한 규범으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지되는 트래픽 관리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ISP와 CP간 인터넷접속서비스 등 통신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과 그에 수반되는 비용 등에 관한 계약(통상 '망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망중립성 개념 최초 제안 'Tim Wu(팀 우)' 컬럼비아대 미디어법 교수 논문 中

users and content providers typically pay ISPs *access fees*—fixed fees to get on the Internet at all—and *usage fees*—variable fees paid based on time or bandwidth usage; however, there have not generally been any additional charges for one user of the network to reach another user or content provider. For example, content providers such as Google and Wikipedia, while paying for their own Internet access and usage, do not directly pay the ISPs of users they reach.

*Tim Wu & Robin S. Lee
Subsidizing Creativity Through Network Design: Zero Pricing and Net Neutrality(2009)*

유럽의 유명 컨설팅 회사인 'Strand Consult'도 '망 사용료'가 망 중립성 위반이라는 구글의 주장을 반박했다.

√ 구글의 매트 브리튼 사장은 "'초고속인터넷의 공정한 비용 회수'라는 말이 '망 중립성'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 'Strand Consult'의 매트 브리튼 주장 Fact Check

- ① EU Regulation에는 Net Neutrality 용어가 없으며, 이용자의 트래픽 차단을 금지하고 있을 뿐임
- ② BEREC의 정기 조사에서도 망중립성 관련 문제가 없음이 확인
- ③ 공정한 비용 회수와 망중립성 사이에는 내재적 충돌이 없음

· 출처 - Fact-checking Google's Matt Brittin at FT-ETNO.

위 업체는 망사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온 컨설팅 회사임. 이에 비해 중립적인 인터넷소사이어티(Internet Society)와 카네기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 International Peace)은 이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보고서를 낸 바 있으며 콘텐츠제공자측의 의뢰로 작성된 보고서는 이보다 훨씬 많음.

*<https://carnegieendowment.org/2021/08/17/afterword-korea-s-challenge-to-standard-internet-interconnection-model-pub-85166>

*<https://www.internetsociety.org/resources/doc/2022/internet-impact-brief-south-koreas-interconnection-rules/>; <https://www.internetsociety.org/blog/2022/09/sender-pays-what-lessons-european-policy-makers-should-take-from-south-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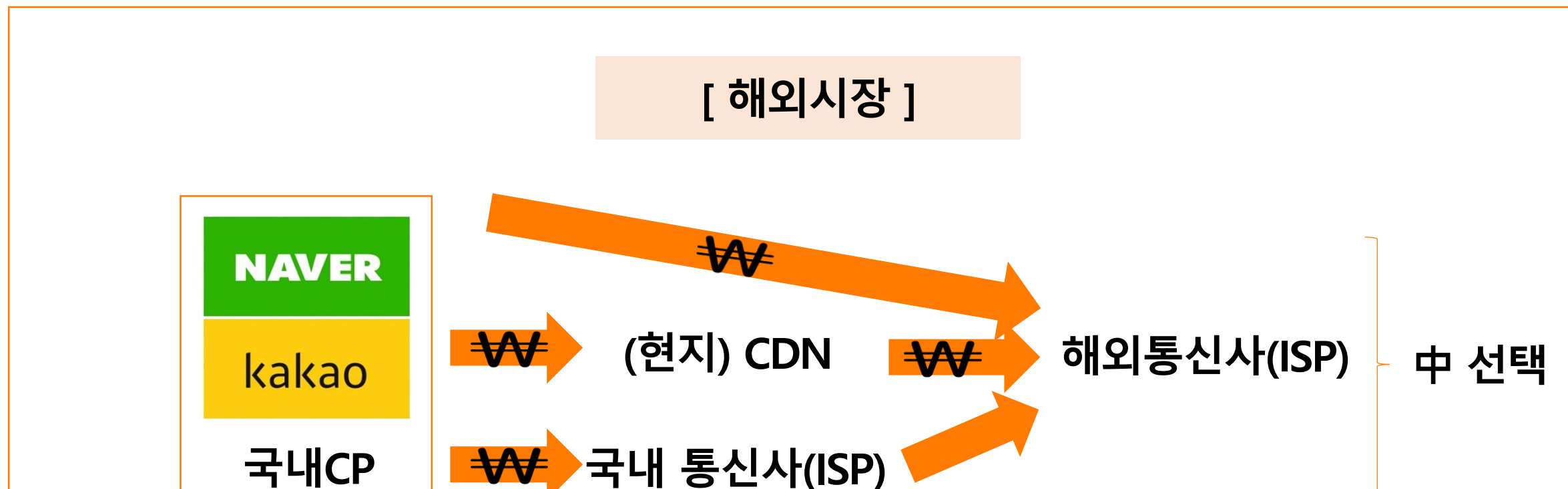
[팩트체크 4]

“망 사용료는 **우리나라**에만 있다”

팩트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인터넷 망은 유상으로, 통신망에 연결하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 국내CP가 해외시장 진출 시에는 어떤 형태로든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함.



질문 6: 슬라이드의 3번째 루트를 쓰는 경우 CP가 자국의 통신사에게 인터넷접속료(트랜짓피)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1,2번 루트를 선택하는 경우 반드시 돈을 내야 한다는 규칙이 어디에 있는가?
 실제로 SK브로드밴드 외의 전세계 거의 모든 망사업자들이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과 1번루트로 접속하지만 무료로 하고 있지 않나? 그 이유는 세계 각국의 망사업자들이 자신의 고객에게 인터넷을 판매한 이상 이들 콘텐츠를 향유하도록 해줘야 하고 이때 넷플릭스/구글/페이스북이 콘텐츠를 해저케이블이나 캐시서버로 망사업자들에게 전달해줘서 이들이 널 상류인터넷접속료를 절약해주는 윈-윈 상황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협상의 결과 아닌가?
 그렇다면 네이버 카카오도 한류가 성장해서 외국의 망사업자들이 필수로 자국 고객들에게 접근권을 제공해야 하는 콘텐츠가 되면 역시 무료로 1번 루트를 쓸 수 있을 것인데 왜 억지로 네이버, 카카오가 돈을 해외에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전 세계 모든 인터넷 망은 유상으로, 통신망에 연결하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 √ 해외CP도 국내시장 진출 시 어떤 형태로든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 즉, 연결되는 첫번째 통신사(또는 CDN)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 그러나, 구글과 넷플릭스는 국내ISP와 직접 연결하고 있음에도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
동일한 방식으로 국내시장에서 사업 중인 해외CP A사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음

※ 왜 글로벌CP는 잘못된 주장을 되풀이 할까?

√ 구글과 넷플릭스는 **자사 서버인 캐시 서버를 국내 통신사에 두고 연결하기를 원함** (트래픽/비용 절감 위해)

√ 또한 국내까지 본인들이 직접 콘텐츠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캐시 서버와 국내 통신사 **망의 연결은 공짜라고 주장**

√ 그러나, 동일한 방법으로 국내 통신사에 캐시 서버를 가져다 둔 **해외CP A사는 국내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음.**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 세계 인터넷 망은 유상이 원칙임**

질문 7: 구글, 넷플릭스는 망의 연결이 공짜라고 한 적이 없고 전세계에 수십조원을 들여 해저케이블 및 캐시서버망을 깔아 각국 망사업자 문앞에 전달해준 노력을 접속협상에서 인정해달라는 것 아닌가? 이걸 인정받아 전세계에서 무료접속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합리적인 기대 아닌가? 한국만 유일하게 돈내는걸 강제하겠다는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지 협상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페이스북이 국내통신사에 1번루트로 접속하면서 돈을 내고 있지만 매우 이례적인 일 아닌가? 페이스북이 또 어느 나라에서 그런 돈을 내고 있는가? 그리고 페이스북이 협상을 통해서 돈을 내고 있다는 것과 돈을 내는 것을 강제하는 법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닌가?

[팩트체크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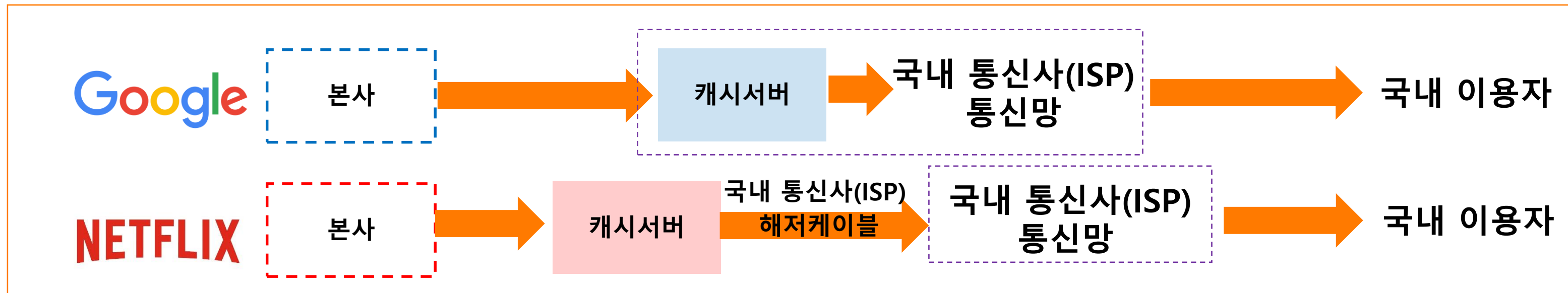
“망 사용료는 통신사의 이중청구이다”

팩트가 아닙니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국내통신사(ISP)로부터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

√ 구글과 넷플릭스가 한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연결한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구글과 넷플릭스가 **처음으로 만난 통신사는 한국의 통신사(ISP)다.**



√ 즉, 국내통신사(ISP)는 구글과 넷플릭스가 **콘텐츠를 최종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질문 8: (위 그림의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 2 참조)

인터넷에서 전송료는 없지만(즉 Zero Price Rule) 통신사들의 반대주장을 따르더라도 구글과 넷플릭스가 바다 건너 국내나 근처의 캐시서버까지 콘텐츠를 끌고 오는 것은 ‘역무’가 아닌가? 이를 손쉽게 받아쓰는 국내통신사들이 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인터넷이라는게 이렇게 서로 데이터 끌어오고 나르는 것에 대해 돈받으려하지 말고 통치자는 것이 Zero Price Rule의 이유 아닌가? 전송료를 받을 때 ‘이중과금’의 문제, ‘거래비용’의 문제가 논문에 잘 나와 있다.

“최초로 연결한 ISP들에게 돈을 내야 한다”? 이런 규칙이 어디있나? 전세계 모든ISP들이 넷플릭스, 구글이 돈을 내지 않고 연결하고 있다. 넷플릭스, 구글이 미국ISP들에게는 돈을 내고 있을텐데 이는 인터넷접속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양면시장으로 이용자와 CP 모두에게 이용대가를 받는 구조이다.

√ 인터넷은 일반 이용자와 CP 양쪽에서 이용대가를 받는 **양면시장 구조**이다.



√ **국내 법원**에서도 인터넷의 **양면시장 구조**를 인정했다.

“동일한 서비스에 관하여 양 당사자로부터 이용대가를 수령하는 형태의 다면적인 법률관계는 현대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소송 1심 판결문 16p 中

√ **미국 법원**에서도 인터넷의 **양면시장 구조**를 인정했다.

미국 FCC는 차터(통신사) 합병 승인 조건으로 ‘CP에게 망 이용대가 한시적 부과 금지’ 조건을 부과했는데, 차터 가입자들이 이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법원은 FCC가 부과한 조건으로 소비자 요금이 인상되었음을 인정하여 합병 승인 조건을 철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출처: 조대근, 인터넷 망 이용의 유사성에 대한 고찰, JICS, 2021. 8월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2014년)인 **장 티롤(Jean Tirole)** 프랑스 경제학자도 인터넷은 **양면시장 구조**라고 논문에서 저술했다.

Many if not most markets with network externalities are two-sided. To succeed, platforms in industries such as software, portals and media, payment systems and the Internet, must “get both sides of the market on board.” 출처: Jean Tirole, Platform Competition In Two-Sided Markets

질문 9: 인터넷 *전체*는 양면시장구조이므로 한국CP는 한국망사업자에게 미국CP는 미국망사업자에게 인터넷접속료를 내는 것임. 하지만 개별망사업자는 양면시장사업자가 될 수 없음. 하나의 사업자가 양면에 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역망사업자가 그럴 수는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개별망사업자가 한국CP와 미국CP 양쪽에서 돈을 받도록 강제하는 법안이니 반대를 하는 것 아닌가?

노벨경제학자 장 티롤의 저 2003년 논문도 제목은 “플랫폼경쟁과 양면시장”이며 주목적은 인터넷CP들이 양면사업자임을 밝히기 위해 쓴 것이고 망사업에 대해서는 백본사업자(세계 1계위 망사업자)에 대해서만 양면시장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나?

장 티롤이 도리어 2004년에 발신자총량제가 아니라 수신자총량제를 주장하면서 논문을 쓴 것을 알고 있는가?

**“법안이 통과되면 없던 망 이용대가
지금 의무가 새로이 생기는 것이다.”**

팩트가 아닙니다

질문 10: ‘망이용대가 지급 거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것(50조1항 2호의2)은 이번이 처음이니 지급의무가 새로 생기는 것 아닌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2016년 발신자총량제에 따라서 인터넷접속료(트랜짓피)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고 또 직접접속료(피어링피)도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총량제의 요소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정당한 대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산정하면 결국 전부 총량제로 널테고 이것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화시대로의 회귀아닌가?

법안은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다. 시장자율협상으로 안되는 문제(무임승차)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 √ 법안은 전체 통신사와 일부 빅테크 양측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금지
- √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거나 정당한 대가의 지급 거부 행위 금지
- √ 이용요금, 계약 조건 등 중요 사항 설명 누락 또는 고지 등을 하지 않는 행위 금지

운영찬 의원 대표 발의(22.9.8)

제50조(금지행위) ① -----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경
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제22
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
한정하고,

1의2. 디지털콘텐츠를 이용자에
게 전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의 이용 또는 제공 등에 관하
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
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
과하는 행위

2의2. 정보통신망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을 부
당하게 지연·거부하거나 정
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2의3. 정보통신망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과정
에서 이용요금, 계약 조건 등
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팩트체크 7]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CP의
인터넷 요금이 인상된다”

팩트가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요금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인가?

- √ 트래픽이 증가하면 요금(단가)은 당연히 떨어진다.
- √ 우리나라에서는 '전송', '정보전달료' 이런 개념이 없다.
- √ 국내 통신사는 CP들이 일반이용자에게까지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역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이미 받고 있다.

질문 11: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접속료는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점점 더 많은 망사업자들과 CDN들이 IXP(인터넷익스체인지)에서 상호직접접속을 하고 있고 해저케이블도 더 많이 깔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2016년 발신자종량제 이후 다른 곳보다 인터넷접속료 인하속도가 느려 현재 Mbps당 빠리 8배, 프랑크푸르트10배로 상대적으로는 인상되었다. '망이용료법'은 발신자종량제를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 법적 의무로 전환하는 법이므로 인터넷접속료의 *상대적* 인상은 더 심해질 것 아닌가?

즉,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특히, 현실적인 국내 시장 경쟁 상황 및 <망 무임승차 방지 법안>상으로
국내 통신사(ISP)는 마음대로 요금을 올릴 수 없다.

√ 통신사(ISP)는 치열한 경쟁구도 하에서
요금을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다.

※ KISDI 통신시장경쟁상황 평가(2021년)

[참고] 인터넷전용회선시장을 별도로 획정할 경우에 대한 평가

- 인터넷전용회선을 별도의 시장으로 분리할 경우,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음
- 1위 사업자(LG군)의 매출액 점유율이 32.3% 수준이며, 요금수준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타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구매자가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 국회에 발의된 어떤 법안에도
국내CP들의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 더구나, 윤영찬 의원 대표 발의 법안에는
통신사 대상 실태 점검이 의무화돼 있어,
CP 대상 불합리 혹은 차별적인 조건 부과가 불가함.

※ ETNO 사례

√ ETNO(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 발간 보고서*에서는 유럽 통신시장 문제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

■ 문제 원인 : 주요 OTT와 통신사업자간 **비대칭적 협상력**(asymmetric bargaining power)과 **규제형평성 결여**(적절한 규제·정책 부재)

· 비대칭적 협상력

- OTT는 언제든지 **다른 통신사업자를 통한 트래픽 전송이 가능**하여 통신사업자의 요금 인상 어려움
- 반면, **이용자들이 OTT 서비스를 필수품으로 인식**하고 있어, 통신사업자는 OTT 트래픽 전송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품질저하 수용도 어려움

· 규제 형평성 결여

- **통신사업자**는 요금 등 **소매** 시장에 대해 강한 규제를 받는 동시에 **도매** 영역에 대해서도 **규제 기관의 개입**을 받고 있음
- **OTT**는 **사후 규제**만 받아 왔음

· 비대칭적 협상력과 규제 형평성을 잘 알고 있는 **빅테크는 이를 활용해 “무임승차”를 압박해 왔음**

* 출처: Europe's internet ecosystem: socio-economic benefits of a fairer balance between tech giants and telecom operators('22.5월)

[팩트체크 8]

“법안이 통과되면

크리에이터들에게 피해가 간다”

팩트가 아닙니다

구글은 망 무임승차 방지 법이 도입되면,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망사용료 법안**은 한국 인터넷 및 크리에이터 생태계와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은 한국에서의 사업운영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고,

크리에이터들은 이를 **수익배분 축소로 인식**하고 있다.

질문 11: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동기부여의 문제 아닌가?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번다고 휴대폰충전기를 공짜로 제공하나? 종량제가 정착되면 결국 인기있는 크리에이터들은 플랫폼으로부터의 발신량을 증대시킬 수 밖에 없고 종량제 정산의 부담을 기업 입장에서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돌릴 수 있지 않나?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크리에이터들이 제공하는 화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그것이 트위치 사태 아닌가? 이미 2016 발신자종량제 이후에도 원래 망사업자들끼리만 적용되기로 했지만 결국 망사업자들도 종량제 정산의 부담을 CP들에게 전가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과연 **일반 개인의 몫을 빼앗으면서까지**,

사업방식을 바꿔야 할 정도로 **망 이용대가의 부담이 클까?**

구글이 동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겠다고 먼저 선언하는 것이 타당한가?

√ 구글 전체 사업규모

- 시가총액 - \$1조 2800억 (1,856조원)*
* 한국 GDP(2,057조원)에 맞먹는 수준
- 매출 - \$2,576억 (374조원)
- 영업이익 - \$787억 (114조원)
- 영업이익률 - 30.5%

√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벌어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는지를 투명하게 밝히는게 먼저이다.

구글은 프랑스에서 이미 비슷한 사례가 있음에도, 사업 방식을 변경했다는 소식이 없었는데, 왜 한국에서만...?

√ 방통위 -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보고서 中 (2019년 12월)

- (구글) 1위 사업자인 Orange 망을 직접 연결하고 paid-peering 계약 체결 ('13년)
 - 기존에 구글은 글로벌 IBP를 통해 프랑스 ISP들에게 트래픽을 전송하였으나, 위 분쟁 이후 Orange와 직접 연동하고 대가 지급
- (넷플릭스) 구글과 동일하게 Orange 망을 직접 연결하고 paid-peering 계약 체결

질문12: 구글이나 넷플릭스가 2013-14년에 페이드피어링 계약을 1회 체결했었다는 것과 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닌가? 전세계의 피어링계약의 99.9%는 무정산피어링인 상황에서 말이다.

또 구글이나 넷플릭스가 2013-4년 이후에는 페이드피어링계약이 모두 소멸되었고 신규계약도 없었다고 하는데 알고 있나?

[팩트체크 9]

“국내CP가 해외 진출시
역차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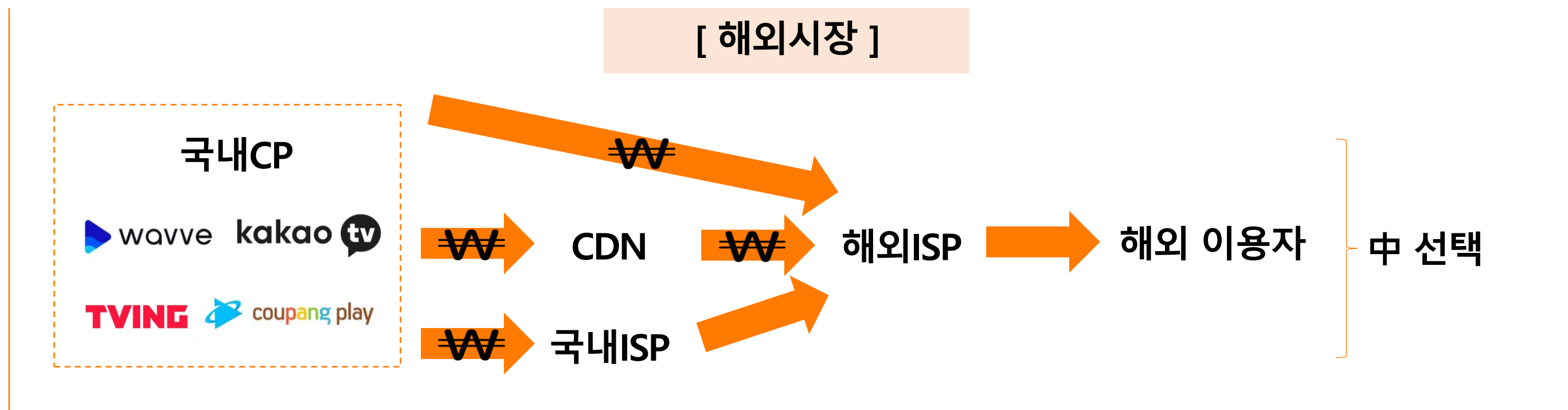
팩트가 아닙니다

현재도 국내CP가 해외진출 시 망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즉, 법안과 국내CP의 역차별 문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현재, **국내CP가 해외시장 진출시** 어떤 형태로든 **망 비용을 지불해야 함.** (앞 17p 참고)

√ 해외에서도 해외 통신사 인터넷 망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질문13: 한류가 성장해서 한국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 해외통신사들도 한국콘텐츠와 직접접속 또는 CDN을 통한 접속을 할 때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왜 이 가능성을 국내통신사들이 먼저 나서서 차단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음. 특히 아래 3번 루트를 따르면 해외 통신사에게는 돈을 내지 않고 해외망을 쓰게 되니 ‘공짜’가 맞음. 그리고 이는 ‘전송료는 없다’는 인터넷의 기본작동원리에 전혀 반하지 않음. 또 CP입장에서도 3번루트는 해외에 나가기 위해 따로 돈을 내는게 아니라 국내망사업자에게 돈을 한번 내면 해외진출까지 다 포함한 연결성(full connectivity)을 얻게 됨. 즉 3번루트는 ‘공짜’가 맞는데 ‘공짜로 이용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억지로 3번루트도 ‘공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아닌가?



[팩트체크 10]

“망 무임승차 방지 법안 논의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팩트가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글로벌CP의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 EU는 GCP의 인프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을 발의할 예정

-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통신망에 대한 공정한 기여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힘.
- 티에리 브레통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내부시장 담당 위원, “빅테크 기업들이 통신망에 기여토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해당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힘(‘22. 5월)
-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3국 정부, EU 집행위원회에 거대 CP에게 네트워크 투자에 기여토록 하는 법안 도입 건의(‘22. 8. 2)

√ 유럽 통신사업자연합회(ETNO)는 GCP의 ‘공정한 비용 분담’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

- GCP의 지배력, 통신사업자 위주의 규제체계 등으로 통신사업자는 GCP와 비대칭적 협상을 하고 있으며, 인프라 투자 여력이 부족해지고 있음
- (공정한 비용 분담 도입시) OTT가 연간 200억 유로 부담시 ‘25년 520~720억 유로의 GDP 증가 및 연간 84만개의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예상

질문13: 유럽에서도 독일, 스칸디나비아 3국을 포함하는 7개국은 반대성명을 냈음. 또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유럽은 데이터가 지나간 만큼 돈을 걷는 발신자종량제 개념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에 비례해서 저소득층 및 도서지역 인터넷확충을 위한 기금형태를 댈 가능성이 높다고 함. 바로 어제 10/11/2022 유럽전체의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 (BEREC)가 발신자종량제에 반대한다는 사전보고서를 발표하였음.

[팩트체크 11]

“유튜브를 통해 K-콘텐츠를
수출하는데 저해가 된다”

팩트가 아닙니다

질문14: CP들의 수익 대비 인터넷접속료가 저렇게 낮은 것은 당연한거 아닌가. 현대 삼성공장의 전기료가 현대삼성의 전체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인터넷은 저렇게 거의 무료로 통신을 자유롭게 하라고 만들어낸 통신체계. 모두가 저렇게 낮은 액수의 인터넷접속료만 내면 아무도 전화시대의 발신자종량제 요금은 낼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유지되고 있음.

구글 망 이용대가 지불 비용과 수익간 규모 비교 - 망 이용대가

■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국내의 한 히트작 사례를 통해 구글이 수취한 광고수익(추정)과 지불하여야 할 망이용대가 규모 비교

✓ 현재까지 10년간 구글이 지불하였어야 할 망 이용대가 규모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가정 1 국내 000 히트작(4분13초)을 시청한 45억뷰(45억 조회수)는 모두 Full HD급(1080P)으로 제공

⇒ (10년간) Youtube를 통해 국내 000 히트작으로 인해 유발된 트래픽 규모는 499,449TB*

* 45억뷰 * 253초(4분13초, 동영상 재생시간) * 0.46MB(1080P 품질 동영상 재생시 초당 발생 트래픽량) = 499,449TB

가정 2 현재까지의 조회수 45억뷰는 매일 123만뷰(view)가 동일하게 발생

가정 3 Gbps(인터넷전용회선) 요금은 국내 대형 CP가 지불하는 요금수준을 고려, 월 300만원을 가정

✓ 망 이용대가 지불 규모 추정 : 10년간 누적 약 1,846만원

① 구글이 국내 000 히트작 유통을 위해 필요한 회선용량 규모는 52.51Mbps*으로 추정

* {45억(view) ÷ [10(yr)*365(d)*24(hr)*60(min)*60(sec)]}*0.46MB/s*8= [45억(view) ÷ 3.15억(sec)]*0.46*8bit = 52.51Mbps

② 구글이 망 이용대가로 지불할 금액은 월 15.4만원(=0.05Gbps*3,000,000)으로 이를 10년간 누적 산출하면 1,846만원 임

구글 망 이용대가 지불 비용와 수익간 규모 비교 - 수익

구글이 벌어드린 광고수익 규모 : 10년간 약 최소 74억~최대 110억원 수준

가정 동영상 동영상 게재를 통해 크리에이터들이 벌어드리는 수익은 view당 2~3원 규모이며, 구글과 크리에이터간 광고수익 분배비율은 45:55 로 가정

① 국내 000 히트작을 통해 크리에이터가 벌어드린 수익 규모는 약 최소 90억원에서 최대 135억원 규모로 추정 (=45억뷰*(2원(min) or 3(max)))

② 이에 따라 구글이 벌어드린 수익규모는 약 최소 73.6억원*에서 최대 110.4억원 규모로 추정

* 73.6억원 = [2원(view당 수익) * 45억뷰 * 0.45] ÷ 0.55

구글이 벌어들인 광고수익 대비 망 이용대가 비중 : 0.17%~0.25%

① 국내 000 히트작을 통해 10년간 구글이 벌어드린 광고수익 규모는 최소 73.6억원으로 추정, 이에 반해 구글이 망 이용대가로 지불하였어야 할 금액은 1,846만원에 불과

② 구글이 지불하였어야 할 망 이용대가 규모 1,846만원은 구글이 해당 영상을 통해 벌어드린 수익 (최소 73.6억원, 추정)에 0.25%(수익 대비 비용)에 불과

광고수익('10년 누적, 추정(a))		망 이용대가('10년 누적, 추정(b))	수익대비 비용 비율(c=b/a)
최소	73.6억원	1,846만원	0.25%
최대	110.4억원		0.17%

망 이용대가 법제화를 둘러싼 단상 질문15: 위 질문11 참조.

■ 크리에이터 시장 고사 주장에 대한 단상

- 망 이용대가는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유통이라는 본연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영업비용으로
 - ⇒ **콘텐츠 사업자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막대한 광고 및 이용료 수익을 수취**
- GCP가 자신의 생태계에 종속된 크리에이터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를 전가할 것임을 자인
 - 만일 GCP의 주장처럼 망 이용대가를 크리에이터가 지불하여야 한다면, 현재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가 수취하고 있는 막대한 광고 및 이용료 수익의 정당성 또한 부정될 수 밖에 없음

■ 인터넷생태계내 GCP(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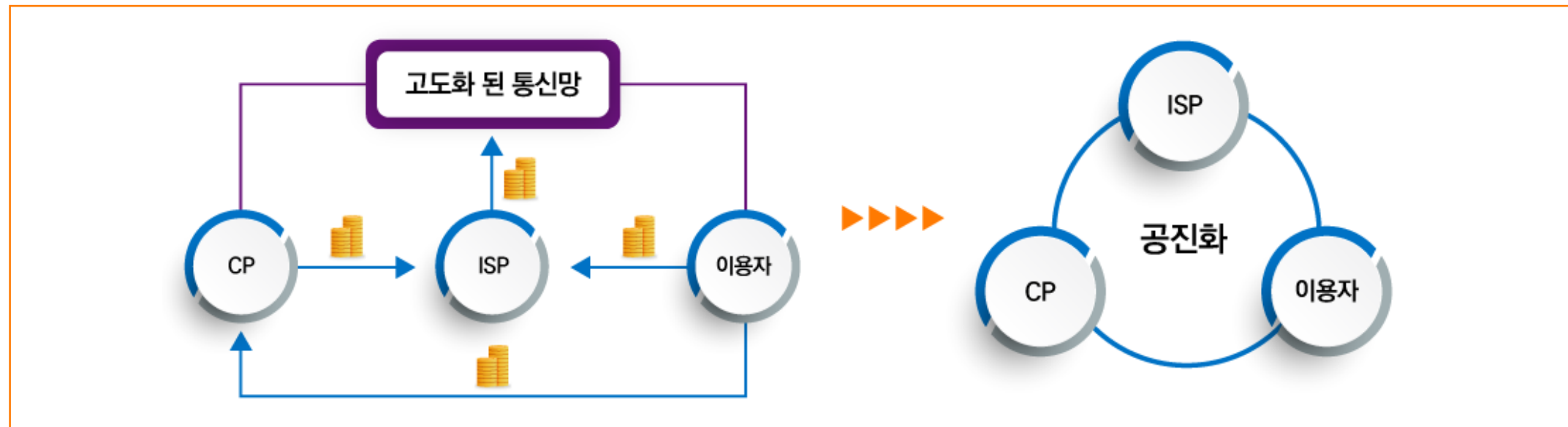
-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가 ①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망 이용대가를 크리에이터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크리에이터 고사 문제)과 ② 자신의 서비스 품질을 저하(1080P → 780P)시킬 수 있다는 것, ③ ISP에게 망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 'Creator-플랫폼-ISP-최종이용자'에 이르는 전체 콘텐츠 유통시장에서 GCP가 상류(크리에이터→플랫폼) 및 하류시장(플랫폼→ISP→최종이용자)에 걸쳐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
- 결국 GCP들은 상·하류 시장에서 자신의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활용, 부당한 비용전가, 망 무임승차, 이용자 피해를 무기로 망 이용대가 법제화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

망 무임승차 방지 법안이 필요한 이유

질문16: 어떤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있는가? 시장실패는 과잉생산 또는 과소생산을 통한 충족되지 않는 수요 또는 결국 소비자후생의 저하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소비자후생의 저하가 있는가? 도리어 시장실패가 있다면 인터넷의 기존거래질서에 반하는 발신자종량제의 과실을 독점하고 있는 쪽은 한국망사업자들 아닌가? 빠리 8배, 프랑크푸르트 10배의 인터넷접속료로 과도하게 인터넷생태계에서 많은 독점이윤을 취하고 있지 않은가? 구글이 발신한 트래픽이 30%가 아니라 한국망사업자들의 이용자들이 수신을 위한 구글트래픽이 30%인 아닌가? 그렇다면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구글콘텐츠 이용을 약속한 망사업자들이 도리어 구글쪽에 돈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구글과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로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에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있다.

√ ISP는 일반 이용자와 CP로부터 투자재원을 조달하여 인터넷 망을 고도화해 왔고, 이러한 거래 질서에서 모든 국내CP와 대부분의 해외CP들이 동참해 왔음



√ 그러나, 우리나라 인터넷 트래픽의 34.1%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과 넷플릭스만이 인터넷 거래질서를 거부하여 시장실패 초래함.



“우리가 가진 철학은 ‘선량한 기업, 시민이 되자’는 것이다.
한국의 콘텐츠제작사, 통신사, CDN 업체들과 협력하겠다”

건의 사항

구글은 더 이상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동업자(유튜버)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지 말라!

√ EU도 구글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법안 마련을 추진 중

EU, '연결 인프라 법안' 제정 착수...망 공정화 논의 글로벌 확산

발행일: 2022.08.02 14:23 지면: 2022-08-03 12면

EU 연결 인프라 법안(Connectivity Infrastructure Act) 개요

법안 명칭

-연결 인프라 법안(Connectivity Infrastructure Act)

발의 시기

-2022년 9월



√ 구글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한국에서의 대응과는 달리,
**EU 유튜브에 법안 반대 게시물을 올리거나,
사업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고 있다.**

“과연 왜 그럴까...?”

EU 집행위, 가짜뉴스 근절 위한 가이드라인 공개... 구글, 메타 등 동참

Charlotte Trueman | Computerworld ⌚ 2022.06.20

질문16: 구글과 같은 입장을 가진 50여 명의 유럽의회의원들, 독일을 포함 7개 회원국, 인터넷소사이어티, 유럽전자통신 규제기구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뜻인가? 한국에서 구글이 오픈넷의 서명운동을 지원하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발신자증량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법안이 나와 있어 상황이 더욱 급박해서 아닌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규약**(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을 새로 개정해 16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 조작 정보를 막기 위해 기업 및 단체가 따라야 할 사항을 소개하고 있으며, 글로벌 업체 및 시민 단체 등이 해당 규약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중략)

EU 내수정책 담당 집행위원 티에리 브레튼은 “허위 조작 정보를 퍼트리면서 금전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야 하며,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형 플랫폼이 이번 규약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매출 기준 최대 6%에 해당하는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 & A